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76
----------	------

2024년 5월 2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3. 29. 심미경 의원(구미경 의원 등 11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24. 4. 8.

다. 상정 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4년 5월 2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자 : 심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의원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규정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원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존속기한, 변경신청,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연구용역의 범위 및 사전검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민간전문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 최종보고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에 관한 공개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
- 평가 및 시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4. 12. ~ 2024. 4. 16.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가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전부개정안의 취지 및 개요

○ 본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설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원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조문의 구성과 내용을 전부개정¹⁾하고자 제안되었음.

※ 동 전부개정안은 제32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의 용어 정정 및 조례 체계를 재정비하여 발의된 의안임.

조례안 조문 구성 및 배열	
제1조(목적)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제2조(정의)	제12조(연구용역 범위)
제3조(의원연구단체 구성)	제13조(연구용역 사전검토)
제4조(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존속기한)	제14조(연구용역비)
제5조(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	제15조(연구용역 관리)
제6조(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제16조(사유서 제출)
제7조(의원연구단체 심의)	제17조(민간전문가의 자격)
제8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제18조(정보공개)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9조(평가 및 시상)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부 칙

1) 법제처(2022)에서 발간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서는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 기준을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2)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는 등의 경우는 전부개정 요건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에 부합하고 있음.

○ 전부개정안은 1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의원연구단체 구성(안 제3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존속기한(안 제4조), 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안 제5조),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안 제6조), 의원연구단체 심의(안 제7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안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제10조),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11조), 연구용역 범위(안 제12조), 연구용역 사전검토(안 제13조), 연구용역비(안 제14조), 연구용역 관리(안 제15조), 사유서 제출(안 제16조), 민간전문가의 자격(안 제17조), 정보공개(안 제18조), 평가 및 시상(안 제19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연구용역’, 등의 용어를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p>3.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안된 연구과제 중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그 연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p>

- 구체적으로 보면, “의원연구단체”를 의원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로 규정하고, “연구활동”을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연구용역”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안된 연구과제 중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그 연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해당 조례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거나 높은 빈도로 사용되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와 다른 용어들을 기술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되는 용어를 규정한 것으로 명확한 의미 전달과 해석 및 입법의 완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나. 의원연구단체 구성 (안 제3조)

○ 안 제3조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서울특별시의 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p> <p>③ 연구단체는 1개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3조(의원연구단체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대표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의원은 3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p> <p>③ <u>의원연구단체는 등록일(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심의·의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u>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 안 제3조제3항은 의원연구단체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을 초과할 수 없고, 1개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는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과 동일한 요건을 취하고 있으나, 그 기준일을 등록일(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심의·의결한 날)로 명시함으로써 구성요건 충족 시기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존속기한(안 제4조)

○ 안 제4조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p> <p><u><신 설></u></p>	<p>제4조(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존속기한) ① 의원연구단체 대표가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u>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안 제5조에 반영)</p> <p>②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p> <p>③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연구단체 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 안 제4조제1항은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의 대표가 안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이는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다른 시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례²⁾와 달리,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연구방법 및 계획 등 세부 사항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있는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계획과 운영을 위한 조치라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출 시점	제출 시점
등록신청서	등록시	등록시
연구활동 계획서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20일까지	

- 안 제4조제2항은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현행과 같이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2) 현행 조례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②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안 제4조제3항은 안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연구단체 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라. 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 등록취소 (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요건, 등록내용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의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연구단체 소속의원 변동사항만 보고했던 현행 조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서를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의 변경 2. 제4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내용의 변경

- 안 제6조는 의원연구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30일을 초과하거나,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함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 및 회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p><u><신 설></u></p> <p>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p>	<p>제6조(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안 제16조 사유서 제출에 반영) (안 제16조 사유서 제출에 반영) (안 제16조 사유서 제출에 반영) <p><u>2. 제16조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p>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구활동비 및 연구활동계획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투명한 연구단체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원연구단체 심의 (안 제7조)

○ 안 제7조는 현행과 같이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 체계성을 위해 현행 조례를 재구성하여 정비한 것인바, 용어의 정비와 체계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p>	<p>제7조(의원연구단체 심의) 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p>
<p>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우수 연구단체의 선정 7.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등 평가에 관한 사항 4.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연구활동비 등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 이내(10% 이내)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과 관련한 회의비, 자문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연간 6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p> <p><신 설></p> <p>② 의장은 제5조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제11조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p>	<p>제8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구입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p>② 의원연구단체 대표는 연구활동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의원연구단체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활동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신설>	<p>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u>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u></p> <p>2. <u>현장방문 등을 위한 차량지원</u></p>

※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사업의 내용,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근 2년 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4.4% 내외로 의원연구단체 지원 예산을 배분하였음.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연구단체 지원 예산 배분 현황('23~'24년)>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총액	1,086,190 (100%)	1,123,592 (100%)
	의원연구단체 지원	48,000 (4.4%)	48,000 (4.3%)

- 이렇게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이내로 의원연구단체 지원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³⁾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포함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 교섭단체 운영, 각종 세미나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곳에 지원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회사무처는 의원연구단체 예산의 최적 배분을 위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안 제8조제2항은 연구활동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안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문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8조제3항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을 위해 대표가 연구활동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연구활동비 지급의 정확한 근거를 남기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한편 안 제8조제4항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현장방문 등을 위한 차량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안 제9조 ~ 제11조)

-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운영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u> <u>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접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92 1261 459 1294"><신설></p> <p data-bbox="292 1906 459 1939"><신설></p>	<p data-bbox="855 371 1378 465">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임기 시작 이후에 구성한다.</p> <p data-bbox="855 517 1378 611">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 data-bbox="855 663 1378 757">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p> <ol data-bbox="871 775 1378 925"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p data-bbox="855 976 1378 1010">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 data-bbox="855 1061 1378 1211">⑥ 제3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data-bbox="826 1261 1378 1469">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p> <p data-bbox="855 1525 1378 1850">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p> <p data-bbox="826 1906 1378 1939">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p>

현행	개정안
	<p><u>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p> <p><u>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③ 위원은 본인이 속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u></p> <p><u>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민간전문가 약간 명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u></p> <p><u>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u></p>

-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의 과제접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교섭단체 대표 추천 의원 각1명,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으로 구성함.

- 현재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관련사항 심의는 의장 방침에 근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의원 5명) 으로 구성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2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대외적 효력을 가진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바, 심의위원회의 구체적 역할과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비교 >

구분	(현행)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기)	(신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근거	의장방침	조례
구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명 (의장 2명, 교섭단체 대표의원 각1명, 운영위원장 1명 추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명 이내 (교섭단체 대표의원 각1명, 운영위원장 1명 추천 +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임기	' 22. 10. 17.~ 24.6.30.	위촉일 ~ 의장 임기만료일

- 또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성 제고와 강화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마. 연구제한(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의원연구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제안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면서, 심의위원회가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의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12조(연구용역 범위)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연구용역을 제안하여야 한다.</p> <p>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 2.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의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4. 최근 3년 유사·중복 연구수행 등으로 연구의 차별성·실효성이 낮은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

- 이는 행정안전부의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연구용역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존 연구용역과제 선정 시에 유사

중복 과제, 국가사무 등에 관련된 연구용역은 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후속 조치로, 관련규정(「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체계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바. 연구용역 사전검토(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의원연구단체가 제안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관련 전문기관에 과업에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연구용역 사전검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안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관련 전문기관에 과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u>

- 이는 관련 전문기관이 연구용역 과제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더 심도 있게 과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사. 연구용역비(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제1항은 의장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연구용역비)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용역의 추정가격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의원수 * 500만원)내에서 자율 편성되며, 의정운영공통경비와는 달리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만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만 지원할 수 있음.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 구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편성목		205-05	205-09	
지급 주기		각종 수요 발생 시	의원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연구용역 계약 시	
목적	다양	의회·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포함)	단일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

- 한편,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용역의 추정가격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3조제2항제2호4)에 따른 금액범위인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의원정책개발비의 특성(의원정수 112명 * 500만원 = 5억 6천만원)을 고려, 높은 용역비로 인해 해당 예산이 부족해져 의원연구단체가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사료됨.

아. 수행관리(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과 연구용역 관련 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5조(연구용역 관리) ①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은 제14조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때에는 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용역 준공 시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준공확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p>

4)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재무국장)이 행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2. 시의회사무처 및 소속관서(소방재난본부 포함)의 추정가격 1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연 행	개 정 안
	<p>과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③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제 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④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p> <p>⑤ 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에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열어야 한다.</p> <p>⑥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⑦ 그 밖에 연구용역 수행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p>

-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이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경우 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용역 준공 후 최종보고서 및 준공확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기관의 선정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수행기관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의장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관리 체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바, 향후 안 제15조 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가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수행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차. 사유서 제출(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의원연구단체의 대표가 안 제5조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예산을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제16조(사유서 제출)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1. 제5조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변경 운영한 경우</u></p> <p><u>2. 예산이 목적 이외로 사용된 경우</u></p> <p><u>3.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u></p>

- 또한 안 제6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⁵⁾와 연계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이는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카. 민간전문가의 자격 및 수당(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심의위원회의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위촉되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5) 제6조(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7조(민간전문가의 자격) 제11조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심의함에 있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청취와 자문 등을 통해 그 전문성 제고와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민간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타. 정보공개(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8조(정보공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결과보고서

- 현행 조례에는 따로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서울 특별시의회 누리집(의정활동-의원연구단체-정책개발연구용역결과)에는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만 공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와 같이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하. 평가 및 포상(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등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포상 등 규정을 두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제19조(평가 및 시상) ①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에 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의장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의원 연구단체에게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 안 제19조제1항은 의원연구단체의 대표가 연구활동에 관한 종합결과 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를 고려하여 단서조항으로 예외규정을 포함한 것임.
- 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은 의장이 안 제7조제2항제3호6)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에게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제7조(의원연구단체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3.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등 평가에 관한 사항**
4.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종합적으로 본 전부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대외적 효력을 가진 조례에 규정하면서 그 체계성을 높이고, 의원연구단체 종합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제안, 그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추후 예산배분시 기타 의정활동 운영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활동비 지원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 이유

-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 내용

-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8조제1항).

8.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76
----------	------------

제안년월일 : 2024년 5월 2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장이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동경비중 일부를 연구활동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음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의장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으로 수정함 (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확보하여야 한다.” 를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p> <p>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구입비 및 급식비</p> <p>2.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p> <p>② 의원연구단체 대표는 연구활동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의원연구단체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활동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p> <p>2. 현장방문 등을 위한 차량지원</p>	<p>제8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 ----- ----- -----</p> <p>지원할 수 있다.</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안된 연구과제 중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그 연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대표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3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등록일(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심의·의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존속기한) ① 의원연구단체 대표가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연구단체 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서를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의 변경

2. 제4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내용의 변경

제6조(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의원연구단체 심의) 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등 평가에 관한 사항

4.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구입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는 연구활동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활동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2. 현장방문 등을 위한 차량지원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의원정책 개발 연구용역의 과제접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임기 시작 이후에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속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민간전문가 약간 명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연구용역 범위)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연구용역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
2.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의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4. 최근 3년 유사·중복 연구수행 등으로 연구의 차별성·실효성이 낮은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

제13조(연구용역 사전검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안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관련 전문기관에 과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용역비)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용역의 추정가격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15조(연구용역 관리) ①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은 제14조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때에는 과제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용역 준공시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준공확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

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제 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⑤ 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에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연구용역 수행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사유서 제출)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변경 운영한 경우
2. 예산이 목적 이외로 사용된 경우
3.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제17조(민간전문가의 자격) 제11조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8조(정보공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결과보고서

제19조(평가 및 시상) ①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에 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의원연구단체에게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활동비 등 예산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본문의 연구활동비 등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신규, 연장)

2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구성의원(※ 신규 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상 임 위 원 회	서 명	비 고

신청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연구 활동 계획서(신규, 연장)

20

본 연구단체의 20 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연구 활동비	총 액	
	산출내역	
기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서

2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내용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구성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등록내용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준공확인서

1. 의원연구단체 :
2. 과 제 명 :
3. 참 여 의 원 :
4. 연 구 기 간 :
5. 소 요 예 산 :
6. 수 행 업 체 :
7. 준 공 일 :

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준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준공확인	
연구단체 대표의원	성명 : (서명)
연구용역 제안의원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